



제33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심 의 안 건

1.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2호
----------	-----

2026. 2. 4.(수)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1. 23.
- 나. 제 안 자 : 박병훈 의원 등 3인
- 다. 회 부 일 : 2026. 1. 23.
- 라. 상 정 일 : 2026. 2. 4.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박병훈 의원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제16조 제6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의 연간 사용상한기준에 대해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그 밖에 군수가 적립” 을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

으로 변경하여 적립요건의 구체화를 도모(안 제4조제1항제3호)

- 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계정 사용금액을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3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상한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산군 조례에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기금 적립 및 사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측면에서 보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서 위임한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상한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사항이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적립금 총액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기금의 과도한 단기 사용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예외 사유를 두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한 점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제2항 제3호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사용하는 경우’ 라는 표현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대상인지, 또는 별도의 기금 전출·연계 개념인지가 문장상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의미의 모호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문장의 명확성과 법규 문장으로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으로 수정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대상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그 자체’ 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및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 ○ 수정 이유

-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에'라는 표현은 기금의 사용 성격과 목적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사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로 수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은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한도(70%)의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규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또한, 오기된 띄어쓰기를 교정함으로써 법규 문장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수정 내용 : 수정안 참조

####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5호
----------	-----

2026. 2. 4.(수)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1. 23.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6. 1. 23.
- 라. 상 정 일 : 2026. 2. 4.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법」 제9조 및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체육센터 이용 활성화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409번지 일원)

- 규 모 : 3,888.75㎡
- 인 력 : 16명(센터장1, 운영팀3, 시설팀6, 프로그램 운영팀6)
- 위탁내용: 시설 운영 관리, 수영 강습 및 골프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 2026. 04. 01. ~ 2031. 03. 31.(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법적 근거 및 절차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운영 규정과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의 위탁 근거를 충족하고 있으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로서 이용자 안전, 접근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응급상황 대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임.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위탁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협약시

-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기준,
- 안전한 시설 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 기준,
- 이용료·강습료 등 수입관리 및 정산 기준,

- 성과지표, 정기평가·감액·계약해지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상 위탁비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동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위탁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4년 9개월간 68억 3,264만원이며, 2026년 9개월분으로 9억 7,135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16명 인건비, 전력·수도·연료 등 운영비,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하였음.
- 그러나 현재 금산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제출된 비용추계는 군비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로서 예상 위탁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 전력·연료·수도 등의 변동비 산정시 사용량·단가 등의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 인력 16명 편성의 필요 최소 인력 여부 및 교대근무·근무 형태 적정성 여부,
  - 수영 강습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강습료 등의 자체 수입 추계 및 비용 상쇄 구조 반영 등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부.

#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6호
----------	-----

2026. 2. 4.(수)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1. 23.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6. 1. 23.
- 라. 상 정 일 : 2026. 2. 4.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매년 회의 안건이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정기 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로 조정하여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금산경찰서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 (기존) 반기별 1회(연 2회) → (개정) 연 1회

- 금산경찰서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8조, 제9조)
- 인용 법령 표기,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현실화하고, 금산경찰서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용 법령 표기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규정 가능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 법률유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기회의를 연 1회로 조정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임시회의 소집 규정이 병행되어 있어 현안 발생 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구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
- 경찰서 부서 명칭 변경 반영과 인용 법령 및 자구 정비는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 법규 문장의 정합성을 높이는 기술적 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밖에,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7호
----------	-----

2026. 2. 4.(수)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 : 2026. 1. 23.
- 나. 제안자 : 금산군수
- 다. 회부일 : 2026. 1. 23.
- 라. 상정일 : 2026. 2. 4.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금산군민의 다목적 군민회관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사용허가의 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

자의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신설 등 법률유보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위 법령과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용허가 제한 사유에 공공질서 개념을 추가하고 정치적·종교적 행위 또는 영리 목적을 명시한 것은 군민회관의 공공성과 중립성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로 타당하며,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청의 재량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점에서도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정치적·종교적 행위 제한은 공공시설 이용 기준을 정한 것으로 공공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동일 기준을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적 규정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운영 과정에서는 비례성과 적정성을 고려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밖에,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8호
----------	-----

2026. 2. 4.(수)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 : 2026. 1. 23.
- 나. 제안자 : 금산군수
- 다. 회부일 : 2026. 1. 23.
- 라. 상정일 : 2026. 2. 4.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박경용 행정복지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금산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조례로 판단되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신설 등 법률 유보가 필요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 만성질환 증가, 돌봄 수요의 복합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지역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전담조직·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통합지원 전달체계를 제도화 함으로써, 개별 서비스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됨.
- 또한, 이 조례안에서 통합지원 창구, 전담조직 및 협의체를 “둘 수 있다”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의 행정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합리적으로 보임.
- 다만,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통합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중장기적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의 연계, 기본 복지사업과의 중복 최소화, 단계적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군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의 내용을 감안해보면, 본 조례 제정안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어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3명, 찬성 3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